

코로나19 시대



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사람들

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
아산시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
2021. 8. 10



코로나19 시대
안전지대가 없는 노동자



보건소 선별진료소 현장 노동자

사회복지현장 지원 노동자

아동보호긴급투입 노동자

아동복지 업무 노동자

관관안내업무 노동자

외 모든 대민업무 노동자



-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
혼란기의 노동 현장

-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 혼란기의 노동 현장

- 노동자의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가중되다.
- 마스크도 안정되게 공급되지 못하던 시기
- 국민 모두가 절박했던 시절 피할 수 없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했다.



•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 혼란기의 노동 현장

- 노동현장의 피해 의식이 쌓이다.
- 죽음으로 이어지는 감염병으로부터 노동현장을 떠날 수 없는 노동자들





- 코로나19 현재까지 대응 변화

코로나19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응 변화

- 중국 방문여부 체크 -> 대구 방문여부 체크 -> 신천지 체크
- > 열이 나는 지 체크 ->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증상 유무 체크
- >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 및 미각 소실, 폐렴 증상
유무체크



코로나19 개인 방역 5대 기본수칙

1. 아프면 3~4일 집에 머물기
2.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
3. 30초 이상 손 씻기
4. 매일 2번 이상 환기
5. 생활속 거리두기



〈아프면 3~4일 집에 머물기?〉

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아프다고 집에 머물 수 있는 노동자가
우리 사회에 몇이나 될까?

- > 사회적 안전망 형성 필요
- >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
- > 경제적 어려움





- 노동자도 쉴 수 있습니다.
제도를 안전하게 만들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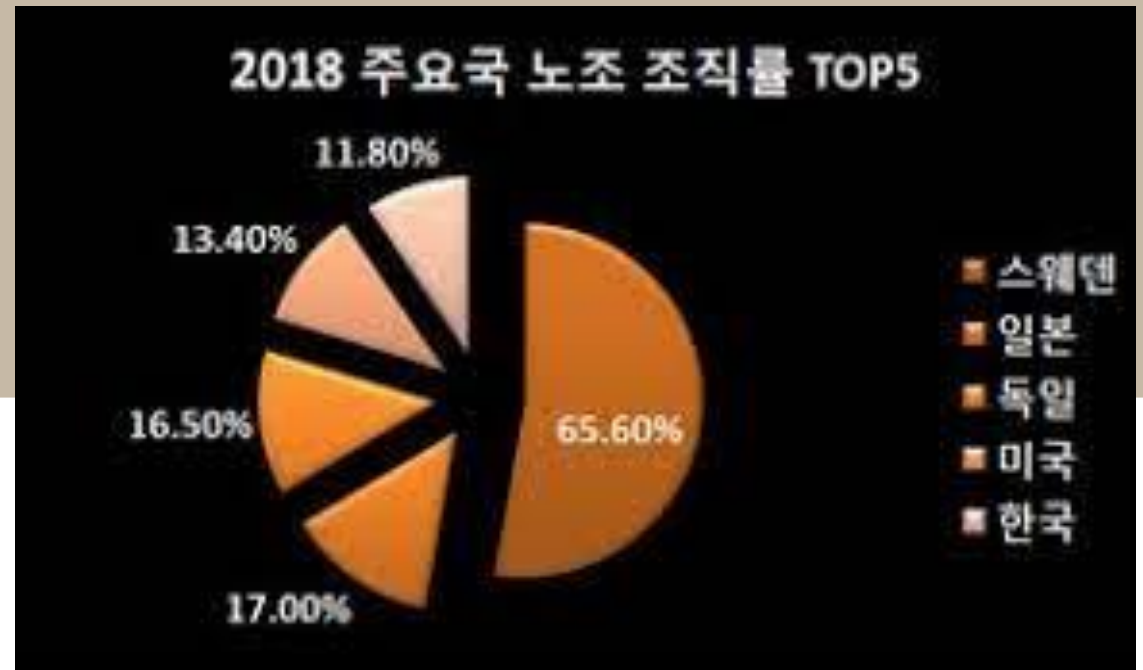
〈유급병가제도 의무 실시〉

4년 동안 단 한번도 아파도 병가를 쓸 수 없었고,
허리 수술 후 바로 근무를 해야 했던 2020년 아산시청 여성가족과
직고용 노동자가 있었습니다,



->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협상에 보장된 유급병가 제도로
첫 병가 실시

-> 과연 노조에 가입된 사람만
누릴 수 있는 권리인가?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르면
누구나 누릴 수 있는
권리일 수는 없는 걸까요?



〈상병수당 지급〉

아프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하지만
상병수당은 업무에 무관하게 아플 때 지급
(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
한국만 미지급)



-> 아프면 쉬려면 임금 보전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는
일입니다. 코로나19의 변이종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
확산 등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
아프면 마음놓고 치료할 수 있는 '건강권' 보장 중요





우리 사회는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지금보다 더
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.
제도로, 연대와 협력으로
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





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.

연대의 확장, 지속을 위한 힘은 어떻게 가능할까?
발견한 쟁점과 과제는?

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

사랑이 사랑에게
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?